

제 5장 일본 경찰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김순석 교수

목 차

I. 서론

II. 일본경찰의역사

III. 일본경찰의 조직

IV. 자치제경찰 (도도부현경찰)

V. 일본경찰의 인력관리

VI. 절충형 체제인 일본경찰



I. 서론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1954년 경찰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도도부현 단위의 자치제경찰**을 실시하였으며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일본은 그 처한 환경과 체제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며 또한 선진제도를 많이 도입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도의 새로운 시도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본의 제도는 항상 많은 참조가 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일본의 제도가 곳곳에 남아 있는 실정이며 현행 우리나라경찰의 파출소제도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일본경찰의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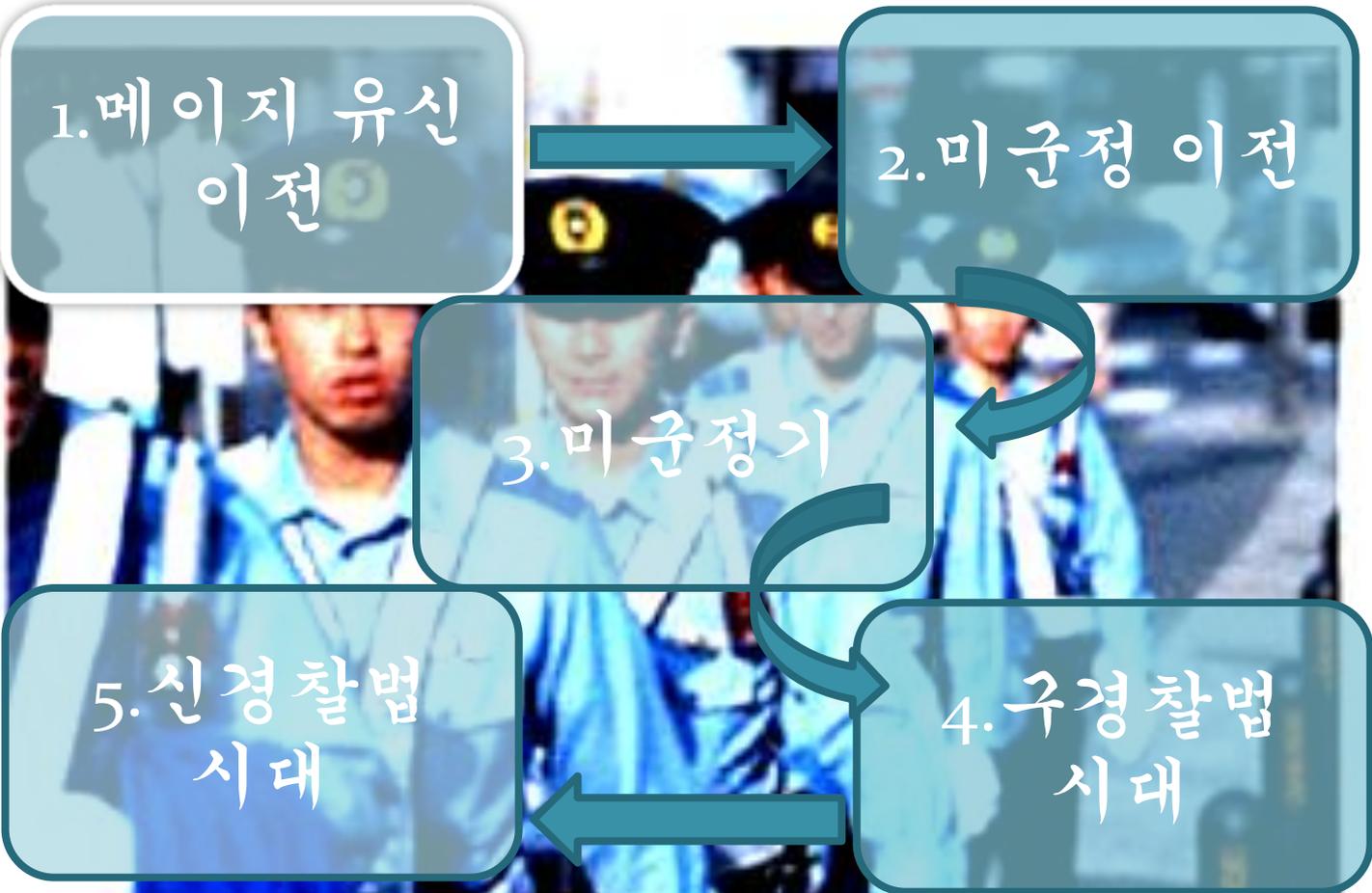
1. 메이지 유신
이전

2. 미군정 이전

3. 미군정기

5. 신경찰법
시대

4. 구경찰법
시대



1. 메이지유신 이전

정봉행소

5인조 제도

- 일본 최초의 경찰제도로써 경찰업무 및 재판·감옥·토목업무를 수행하였음

- 국민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반강제적으로 묶어서(5家, 5戶), 연대하여 서로 감찰하는 경찰의 기능을 수행 (모든 국민 대상 X)
- 범인체포, 숙박단속, 여행 및 도주의 단속, 장물단속, 화재 예방 등의 업무 수행
- 막부라는 강력한 권력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 에도시대 초기에 기독교 포교금지와 부랑자 단속의 효과를 올리기 위한 제도
- 중세에는 각 지방의 번을 중심으로 봉건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번주와 그에 충성하는 무사(사무라이)들이 해당 지역의 치안을 담당

2.미군정 이전

경찰은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중앙집권적 왕정체제 구축과정에서, 군국주의의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일왕의 독립명령권 인정하는 등 강력한 경찰체제를 보유하였다. 또한 각종 치안입법을 통해 국민의 사상을 감시하였음

→ 경찰의 창설은 시민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보호와 군국주의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음

병부성
시대

- ① 번병·부병을 조직
- ② 폐번치현 조치로 번병·부병은 존재기반 상실

사법성
시대

- ① 동경부에 나졸 창설 ② 사법직무정제 규정 ③ 경보료직제장정

내무성
시대

- ① 내무성 및 내무성의 관할 하에 동경경시청을 창설함
- ② 일군일구 경찰서주의를 채택하여 전국적인 경찰망을 완성함
- ③ 헌병조례(1881)에 의해 헌병경찰제도가 운영되어 헌병은 군사 및 행정경찰·사법경찰 활동을 함께 수행하였음

3.미군정기

① 철저한 개혁의 실시

→ 일왕의 독립명령권·명치헌법·각종 치안입법 등을 폐지하고, 정치경찰·헌병대·내무부 등을 폐지하고, 경찰수뇌부와 사상경찰 관계자 등을 파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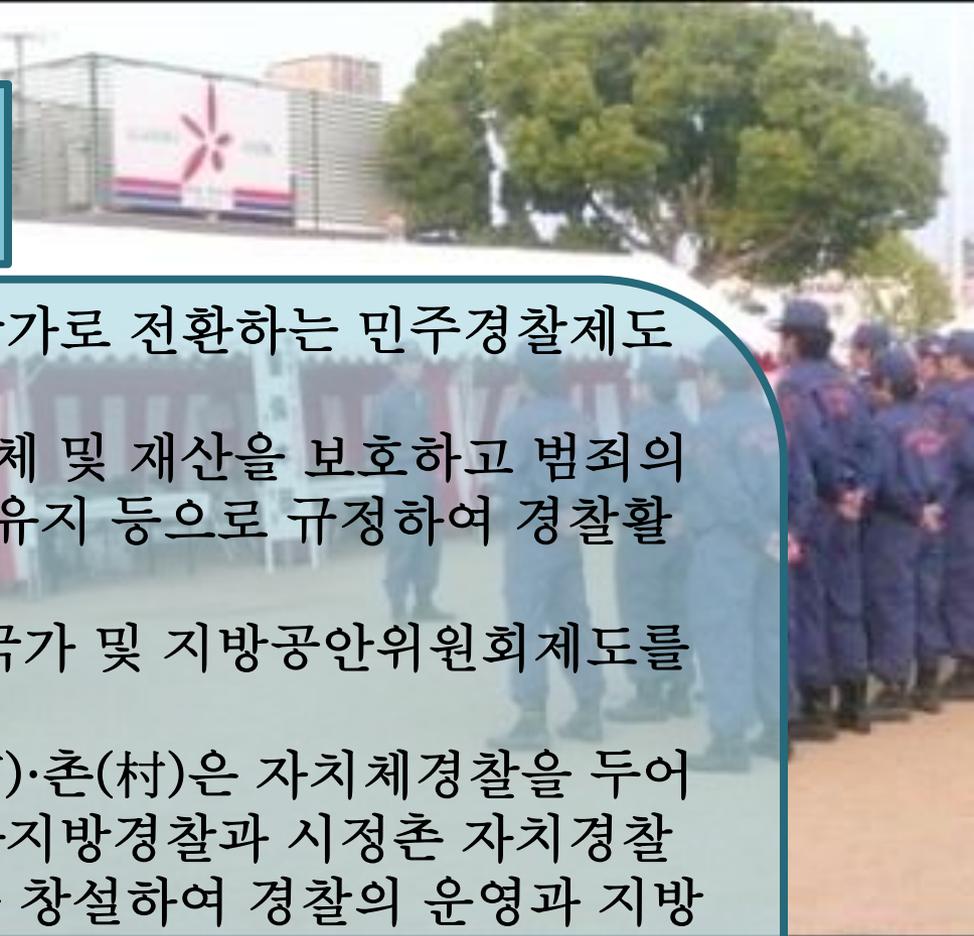
② 검사의 수사 독점권을 폐지하였음

→ 경찰에게도 수사권 부여

③ 비경찰화 작업 추진

4. 구경찰법 시대

- ① 전체적인 군국주의에서 민주국가로 전환하는 민주경찰제도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음
- ② 경찰의 임무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수사 및 피의자의 체포 및 공안의 유지 등으로 규정하여 경찰활동의 범위를 한정하였음
- ③ 경찰의 민주적 관리기구로서 국가 및 지방공안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음
- ④ 시 및 인구 5천명 이상의 정(町)·촌(村)은 자치체경찰을 두어 경찰을 내각총리대신 관할의 국가지방경찰과 시정촌 자치경찰의 2원적 구조를 가진 경찰제도를 창설하여 경찰의 운영과 지방자치를 연계하려 하였음
- ⑤ 자치체 경찰은 국가비상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지방경찰과 대등한 지위에 있었음
- ⑥ 국가비상시에는 국가공안위원회의 권고를 조건으로 내각총리대신에게 국가비상사태의 포고와 전 경찰을 통제하는 권한을 인정하였음



5. 신경찰법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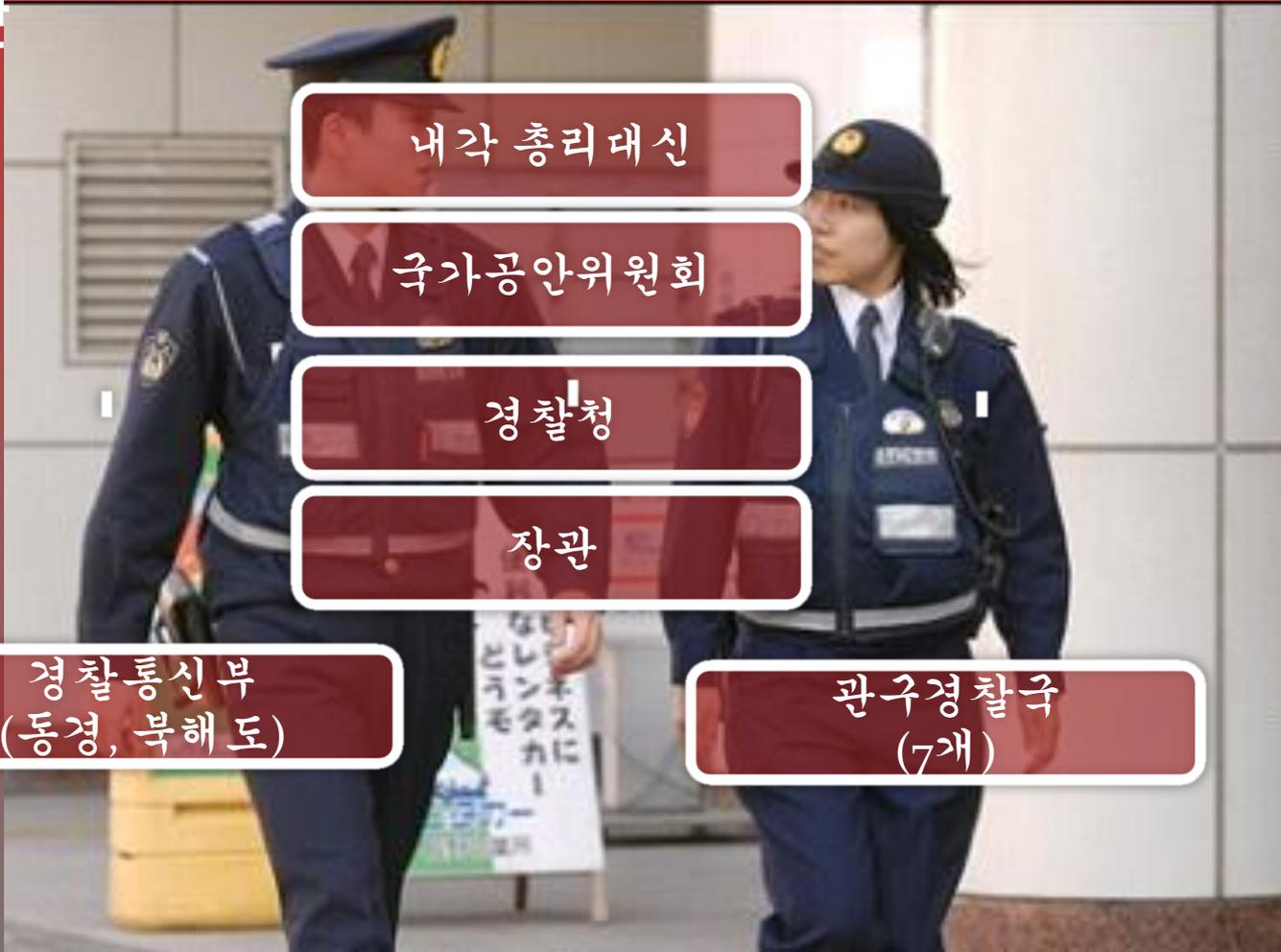


* 구경찰법의 결함을 시정하고, 조직의 합리화와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1951년 구경찰법의 일부를 개정

- ① 능률화의 요청으로 경찰운영의 단위를 격상·일원화하여 국가지방경찰을 폐지하고 자치체경찰을 도도부현경찰로 일원화
- ② 도도부현경찰제도와 공안위원회에 의한 경찰관리라는 현행 제도의 골격이 완성됨
- ③ 신경찰법에서는 경찰의 민주성과 능률성, 국가적 성격과 자치적 성격, 중치적 중립과 책임의 명확화라는 상반된 요소의 조화에 중점을 두었음
- ④ 중앙과 지방에 공안위원회제도를 존속시킴으로써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였음
- ⑤ 중앙의 경찰기관에서 국가가 책임을 분담할 특정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가공안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대신으로 함으로써 치안행정책임을 명확히 하였음
- ⑥ 도도부현경찰에 원칙적으로 자치적 성격을 부여하고, 동시에 국가적 요청에 근거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국가적 성격을 부여하여 국가와 지방자치의 조화를 추구하였음

Ⅲ. 일본경찰의 조직

- 개 관



내각 총리대신

국가공안위원회

경찰청

장관

경찰통신부
(동경, 북해도)

관구경찰국
(7개)

국가공안
위원회

→ 관구경찰국

→ 경찰청

국가공안 위원회

- ① 경찰청 소장사무에 대한 경찰청의 관리기관 (위원장 : 국무대신)
- ② 경찰교양, 경찰통신, 범죄통계,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 ③ 설치목적 : 운영에 있어서의 독선과 관료화를 막아 민주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
- ④ 경찰청장관을 통하여 경찰청을 관리한다.

-->지방자치경찰인 도도부현경찰의 지휘.감독은 경찰청장의 권한이므로 국가공안위원회가 지휘.감독할 수 없다.

관구 경찰국



① 경찰청의 지방기관으로서 경찰청의 소관사무를 일부 분장한다.

② 필요성

지역적인 대규모 소요사태에 대처

대규모재해사태와 신속한 지휘 및 자치제와의 연락

범죄의 광역화 경향

전국적 통신시설 확보를 위한 광역센터 설치

관구경찰학교 운영을 통한 중견간부양성

전국적 입장에서 조정

고등검찰청 등 다른 기관과 긴밀한 연락을 통한 원활한 경찰운영

경찰청



- ① 국가공무원위원회에 두나 위원회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닌 독립 행정기관
- ② 경찰청장관 - 국가공안위원회가 내각총리대신의 동의를 얻어 임명
- ③ 구성 - 장관관방국, 생활안전국, 형사국, 교통국, 경비국, 정보통신국
- ④ 부속기관 - 경찰대학교, 과학경찰연구소, 항공경찰본부
- ⑤ 대규모재해 등 긴급사태의 발생시 내각총리대신과 경찰청장관의 중앙통제를 인정함.

IV. 자치제경찰 (도도부현경찰)

도도부현공안위원회

- ① 도도부현 경찰을 관리
- ② 권한에 속하는 업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위임에 근거한 규칙 제정권
- ③ 지방 경무관의 임명에 관한 동의권, 도도부현 경찰관에 대한 징계 및 파면에 대한 권고권, 경찰조직의 세목에 관한 제정권, 경찰청 또는 다른 도도부현 경찰에 대한 원조요구권 등 (경찰법상 임무 및 권한)
- ④ 도로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등, 풍속영업의 허가 및 정지.취소, 총포도검류 허가 및 정지 .취소등의 권한 (특별법에 따른 권한)

도도부현경찰

- ① 구성 : 동경도경시청, 도부현경찰본부
- ② 경찰관리기관으로 지사의 관할하에 도도부현에 공안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③ 경시총감의 임면 - 국가공안위원회가 도(都)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임면
- ④ 도부현경찰본부장의 임면 - 국가공안위원회가 도부현공안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면

특별경찰

행정경찰기관

- ① 일반경찰이 담당하는 사무 이외의 각자의 행정사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경찰권 행사
- ② 위생.교통.산업 등에 관한 여러 행정을 담당하는 각 부처의 장 및 그 아래의 특별지방관청은 법령이 정함에 따라 각자 특별경찰관청으로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짐

특별사법경찰

- ① 형사소송법상 “산림.철도.기타 특별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직원으로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는 따로 법률로 이를 정한다” 고 규정하여 형사소송법에 기초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기관을 인정
- ② 일반 사법경찰기관과 권한의 경합으로 양자의 협정 필요
- ③ 유형 : 감옥 또는 교도소의 장 및 감옥직원.영림국직원.공유 임야담당직원

준사법경찰

- ① 의의 - 사법경찰직원으로서는 지정은 없지만 직무내용상 사법경찰권과 유사하고, 특정한 범죄에 1차적인 강제조사권을 행사하는 기관
- ② 유형 - 철도 공안직원, 국세청 감찰관, 국세조사관 및 세무서 직원, 전대공사 임직원, 세관장 및 세무직원, 입국 경비관, 소방장 및 소방서장, 공안조사관 등
- ③ 海上保安廳 - 우리의 해양경찰과 유사

V. 일본경찰의 인력관리

일본경찰의
계급

○고위직

1. 경찰청 장관(치안총감. 즉, 경찰청장) : 경찰청 수장
2. 경시총감(치안정감-서울지방경찰청장) : 경시청 수장
3. 경시감(치안감):경찰차장.국장, 북해도와 규모가 큰 부(府).현(縣)의 경찰본부장, 경시청의 주요 부장, 관구경찰국장등이 이에 속한다.
4. 경시장(경무관) :경찰청 과장 및 보통 규모의 부현의 경찰본부장, 경찰청부장이 이에 속한다.

○중간직

5. 경시정(총경) : 경시청 과장, 현의 경찰부장, 경찰서장, 경찰청 과장 보좌관
6. 경시(경정):경찰청 계장, 경찰서 과장, 경찰학교 과장
7. 경부(경감) : 경찰서 과장 또는 계장
8. 경부보(경위) : 국가공무원 제1종 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됨

○하위직

9. 순사부장(경사) : 경찰서 계장 또는 반장
10. 순사장(경장) 도도부현 경찰에 근무하는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순사를 순사장으로 임명하여 최일선에서 순사의 지도를 맡는 것
11. 순사(순경) :일선의 가장 하위계급

채용의 3단계

경찰관은 국가공무원 1종시험 합격자. 국가공무원 2종시험 합격자.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로 처음부터 구분

Career

국가관료라고 지칭되기도 하는 경찰청의 Career는 1997년 490명으로 경찰청에는 50%. 경시청과 도도부현 경찰본부에는 35%. 다른 성.청 및 해외공관에의 파견으로 15%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다.

준Career

독자적인 승진제도를 운영에 대한 대책으로, 준Career는 채용과 동시에 순사부장으로 임용되어 최단기 코스의 경우 29세 전후에 경부가 되고 35세에는 경사가 되며, 일부는 경시감까지 승진한다.

Non-Career

대졸. 전문대졸. 고졸로 나누고, 평균적으로는 순사부장이 30대 전후. 경부는 40세 전후에 된다. 최단기 코스는 29세에 경부가 되어 40세에 경시가 되어 40대 후반에 경시청. 도부현 경찰본부 과장 혹은 경찰서장이 되면 순사 출신으로서는 초고속 승진이라 할 수 있다.

승진

1) 시험승진

일본 경찰의 승진제도는 경부 이하의 경찰관에게는 시험에 의한 승진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연공 서열주의에 의하여 선발되는 경우도 많다.

2) 근무평정제도

종래의 인사고과제도가 근무성적을 평가하기 보다 피평정자의 인물평정에 치중하였던 바, 그에 대한 개선으로서 성적주의를 위주로 과학적·합리적인 근무평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 일본의 경찰청 및 경시총감 코스

일본은 관례적으로 도쿄경시청의 경시총감(우리나라의 서울 정장에 해당)은 경찰청 장관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인사관행의 배경은 일본경찰의 역사가 1874년 경시청의 창설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경시청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 후 미국식 행정제도의 도입으로 1952년에 신설되어 경찰관들은 경찰청 장관 보다 경시총감을 더욱 명예롭다고 생각하는 전통이 있다는 것이다.



VI. 절충형 체제인 일본경찰

- 인의-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형태로서 통합형, 순화된 분권형으로도 불리며 효과적이고 통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경찰 제도의 경찰권 남용의 가능성을 억제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리고 분산형은 집권화한 경찰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경찰권의 남용에 대한 두려움과 견제, 이를 통해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측면이 강조되는 체제이나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범죄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경찰권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 받는다. 그리고 경찰체제는 매우 분권화 되어 있으며 그 책임은 지방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 분산형(분권형 체제)은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나라에 해당하며 집중형(집권화 체제)은 사회통제를 시민의 자유, 권리보다 우선시 하므로 나타나는 체제이다. 특징으로는 강력한 관료제와 집권화된 중앙정부의 형태를 가지며 단일한 성문법체계와 형사사법체계를 가진다. 또한 중앙정부를 보호하는 보호자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해당하는 국가로는 프랑스, 한국, 대만, 덴마크 등이 있다. 일본의 경찰체제는 절충형에 해당하고 이러한 원인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패전 이후 미국의 분권형 체제가 도입되었으나 일본 사회의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면서 집권화형 체제가 도입되어 일본만의 특유한 경찰형태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